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공고

2026년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단법인 정읍약용치유 네트워크협의회에서 근무할 사무국장 및 사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이사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기관 :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 채용인원 : 2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1명)
- 채용기간 : 2026년 9월 ~ 12월(4개월)
- 채용분야 세부내역

분 야	인 원	주요 업무 및 역할	근 무 처
사무 국장	1명	○ 사무국 운영업무 총괄 -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 추진 -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 예산집행, 계약 등 - 사업 기획·추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 사무국 운영·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정읍시 제2청사 1층)
사무원	1명	○ 사무국 운영업무 보조 - 사업비 집행, 사업 결과 보고, 정산서류 작성 등 -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 사무국 추진성과 및 예산 집행실적 관리 등 - 기타 사무국에 필요한 업무지원 및 관리 보조 등	

※ 업무추진 실적 및 성과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사업기간 내(사업종료 2028. 12. 31.) 1년 단위 연장계약 가능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 ~ 금), 1일 8시간(09:00 ~ 18:00), 상근(겸직불가)
- 급 여
 - 사무국장: 1,525만원 내외/4개월(4대 보험, 명절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
 - 사 무 원: 1,148만원 내외/4개월(4대 보험, 명절수당, 연차수당 등 포함)
- ※ 추후 임용대상자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급여 차등 계약 가능(사단법인 내 운영위 심의·결정)
- 기타조건
 - 「2026년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은 한시적 사업이고 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채용기관은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킹협회의체이므로 정읍시 공무원 전환 대상이 아님
 - 「2026년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사업 기간 내(2028. 12. 31.) 1년 단위로 연장계약 가능
 -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킹협회의체 직원복무 규정을 따르며 그 외 기타 복무사항은 「정읍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준용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 성 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사무국장 :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사람
 - 사 무 원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 사람
- 지역조건 : 공고일 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 없어야 함)
-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요건(필수)
사무국장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근무경력 상근만 인정) ○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 농업·농촌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관련분야 적용은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함

- 농촌정책 :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촌계획(건축·경관·조경 등), 마을공동체, 농촌(지역)개발, 농촌경제, 농촌복지, 농촌융복합 등
- 농업정책 : 농업경제, 농업경영, 농산어촌개발, 6차산업, 농식품가공, 원예, 로컬푸드, 푸드플랜 등
- 공동체 :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교육공동체, 지역개발 등
- 농업·농촌분야 학위 :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잡업,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가정학, 농업교육, 농업기계, 농공학, 농업토목, 식품가공, 농산제조, 농화학, 농업복지, 조경학

다. 우대 요건(공통)

우대요건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동일 또는 유사사업 근무경력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무능력(문서편집 및 표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전산, 회계, 홍보 관련업무 근무 경력자 ○ 농업·농촌분야 관련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차량 등 이동 수단을 갖춘 자 ○ 공고일전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자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 및 자격증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증은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정함

○ 직무분야 및 사무능력 자격 인정범위

구 분	자격증 명칭	시험 주관사
직 무 관 련	○ 농어촌개발 컨설턴트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소통 지도사	
	○ 서비스경영자격(SMAT)	한국생산성본부
	○ 검색광고 마케터 ○ SNS광고 마케터	정보통신기술자격검정(KAIT)
사 무 능 력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사무자동화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서실무사 자격증	한국정보관리협회
	○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한국생산성본부
	○ MOS 워드,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사(한국 YBM 대행)

4. 채용 일정 및 방법

가.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026. 8. 4.(화) ~ 2026. 8. 10.(월) <7일간>

○ 원서접수 : 2026. 8. 6.(목) ~ 2026. 8. 10.(월) <5일간>

○ 접 수 처 : 정읍시 제2청사 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사무실(접수 시간 9:00~18:00)

- 주소 :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 / 담당 연락처 : 063-539-6343

- 8. 10.(월)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기간 이후 도착분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 haen25@korea.kr

※ 우편 접수 제한 사유 → 우편물 누락 및 기한 내 미접수 방지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8. 11.(화) 예정(개별통지)

○ 면접시험 일정 : 2026. 8. 13.(목) 예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8. 14.(금)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원서접수 일정을 제외하고 (사)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사정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계획, 자격, 경력 등을 서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선발

○ 2차시험(면접시험) : 응시원서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하며 면접 심사 평가표에 따라 점수 부여

5.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붙임 양식 참고)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2026년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 1부 (채용분야 중 <u>사무국장에 한함</u>)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 각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학력, 경력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 시 제출 (원본 제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채용 신체 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6. 유 의 사 항

- 채용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제출서류 허위·착오 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
 - 서류심사위원별 평점점수의 합을 총 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를 서류점수로 함
 - 응시자의 서류전형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서류전형 점수 순으로 면접대상자 결정 후, 면접점수만으로 결정함
 - 면접위원의 면접점수의 합을 면접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 면접점수를 최종 점수로 함
 - 응시자 면접점수가 심사위원별 과반수 이상이 60점 이하 경우 또는 평균 면접점수(최종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최종 합격자 중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면접심사 평가항목 중 1순위(직무수행 능력 점수), 2순위(사무능력 점수) 우수자 순으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 금지 및 제한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유효한 서류만 인정함
- 블라인드 채용방식 추진에 따라,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개인 인적사항 [출생지, 학연, 혈연 등] 작성할 경우 서류심사 시 감점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농업·농촌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연구, 정책사업 관련 제외)
- 본 채용계획은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됩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 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에서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킹협의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문의처 : 정읍시 제2청사 (☎ 063-539-6343)

제출서류 목록 확인표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채용 분야	연락처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O, X" 표시

서류 목록	제출 여부 (O, X)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사무국장 지원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상근 경력 증명서	
7. 관련 분야(공고문 3p 참조) 근무 경력 증명서	
8.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 근무 경력 증명서	
9. 농업·농촌분야 석사, 박사 학위 취득 증명서	
10. 전산, 회계, 홍보, 마케팅 관련 근무 경력 증명서	
11. 사무능력(문서편집 및 표계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위와 같이 제출서류 목록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응 시 원 서

본인은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킹협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응시자 (서명)

년 월 일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킹협의회 이사장 귀하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성명	(한글)	(서명또는인)
채용분야			(한자)	
생년월일		이메일		
주 소	(우)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응 시 표

((사)약용치유네트워킹협의회 사무국 직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채용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킹협의회 이사장 印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력 서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채용분야		
성명				
자격	자격증명	취득일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기간	직위	담당업무
학위	전공분야	취득(예정)일	종류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학력·경력 증빙자료 및 자격 증명서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이사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채용분야		성명	

※ 작성요령

- 경력사항 등 구체적인 업무 및 성과 내역을 자유롭게 기술
- 블라인드 채용방식 추진에 따라,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개인 인적사항[출생지, 학연, 혈연 등] 작성할 경우 서류심사 시 감점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연구, 정책사업 추진 관련 제외)
-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되 필요시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작성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 직무수행 계획서

응시번호		채용분야		성명	
------	--	------	--	----	--

1)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한 역량(전문성, 강점 등)과 해당 역량을 통해 2026 년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의 비전 및 실행계획 등을 기술하시오.

2) 지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대표적인 경험과 이를 통해 본인이 배운 점을 기술하시오.

3)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과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 작성요령

- 귀하가 살아온 경험, 근무경력 및 업적을 바탕으로 농업유산의 발굴 및 보전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비전과 실행계획, 기여방안 등을 A4용지 2페이지 이상의 분량으로 자유롭게 기술한다.
- 블라인드 채용방식 추진에 따라,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개인 인적사항[출생지, 학연, 혈연 등] 작성할 경우 서류심사 시 감점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연구, 정책사업 추진 관련 제외)

[사]정읍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이사장 귀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정음약용치유네트워크협의회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 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